

수원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0나890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9. 15.

판 결 선 고 2021. 10. 6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9. 25. 선고 2020가단542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C 사이의 시흥시 D 소재 커피숍에 대한 2017. 8. 4.자
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
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1)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.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

가.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중 “아르바이를”을 “아르바이트를”로 수정한다.

나.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내지 제8행 중 “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C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고, 설령 이를 전제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의 선의(善意)가 명백하므로,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”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「갑 제4호증의 기재, 당심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와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무렵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무자력 상태인 C이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.」

다.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중 “이루어졌습니다.”를 “이루어졌습니다(이후 피고가 2018. 4. 16. G에게 이 사건 커피숍을 권리금 1,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바, 이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권리금 1,500만 원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).”로 수정한다.

라.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 내지 제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「④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권리금 1,500만 원을 C 아닌 C의 언니인 F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.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‘C이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.’고 주장하나,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C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.」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욱, 판사 강경묵, 판사 김태형

1) 원고는 항소장 중 항소취지란에 “1. 원판결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

한다.”라고만 기재하였으나,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.